옥천군 공고 제2020-7호

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01월 20일

옥 천 군 수

1. 조 례 명

○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옥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형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상품권 판매 할인율 상향조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상품권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류(紙類)형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형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(안 제4조제3항)

○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가맹점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(안 제8조제1항)

○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판매 할인율을 상향조정 함 (안 제11조제3항)

○ 카드형 상품권 사용 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규정 추가함 (안 제12조제2항)

4. 제정근거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및 제22조

5. 의견제출

○ 「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경제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362, FAX : (043)731-2913

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.

6. 붙임

○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”를 “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무기명 유가증권”을 “유가증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금융기관을”을 “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종류는 1만원권으로 발행하되”를 “권면금액은 1만원으로 하되”로, “종류를 추가하여 발행”을 “권면금액을 추가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류(紙類)형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형 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전단 중 “지정한다”를 “지정하고,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5조의 유통지역 내 「여신전문금융법」에 따른 신용카드가맹

점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판매 및 적립 포인트를 지급”을 “판매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5%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3%”를 “5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할인판매 및 적립 포인트 지급”을 “할인판매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수수료”를 “수수료, 카드형 상품권 사용 시 가맹점 카드 수수료”로 한다.

1. 상품권 할인판매

제1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	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옥천사랑상품권"이란 옥천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. 2. "판매대행점"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옥천사랑상품권(이하 "상품권"이라 한다)의 보관・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. 3.・4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---------- 유가증권----------. 2. ----------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----------. 3.・4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) ① 상품권의 종류는 1만원	제4조(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) ① ------ 권면금액은 1만

권으로 발행하되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.	원으로 하되---------- ---------- 권면금액을 추가---------- 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류(紙類)형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형 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.
제8조(가맹점 지정 및 취소)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한다.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	제8조(가맹점 지정 및 취소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 지정하고,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한다. 다만, 제5조의 유통지역 내 「여신전문금융법」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유통 활성화 시책) ①·② (생 략)	제11조(유통 활성화 시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	③ ---------- ----------

서 할인 판매 및 적립 포인트를 지급 할 수 있다.	----- 판매를 ----------.
1. 해마다 설·추석날로부터 1개월 전 : 5% 할인	1. ---------- 10퍼센트 ----------
2. 그 외의 기간 : 3% 할인	2. ---------- 5퍼센트 ----------
3. 할인 판매시 포인트 미적립	<삭 제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상품권 할인판매 및 적립 포인트 지급에 따른 손실분은 군에서 보전하며,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.	⑤ ---- 할인판매----------.
제12조(예산지원 등) ① (생 략)	제12조(예산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.
1. 상품권 할인판매 및 포인트 적립	1. 상품권 할인판매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와 환전에 따른 수수료	3. ---------- 수수료, 카드형 상품권 사용 시 가맹점 카드 수수료

4.·5. (생 략) ③ (생 략) 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4.·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 례 명: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 례 안	의 견